

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대상	금액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3만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2만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1만5천원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5.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1만5천원
6.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3만원
7.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재등록	3만원
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1만5천원
9. 변경허가	1만5천원
10. 변경등록	1만5천원
11. 허가증 재발급	1만5천원
12. 등록증 재발급	1만5천원